

대법원 2016. 5. 24 선고 2016다7937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재판경과

대법원 2016. 5. 24 선고 2016다7937 판결

대전지방법원 2016. 1. 22 선고 2015나7143 판결

대전지방법원 2015. 7. 9 선고 2015가소13868 판결

전문

원고, 상고인A

피고, 피상고인B

판결 선고 2016. 5. 24.

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. 1. 22. 선고 2015나7143 판결

주문

상고를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이유

상고이유를 판단한다.

이 사건은 소액사건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의 사유가 있어야 상고할 수 있는데,
상고이유의 주장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

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
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대법관이인복

대법관김용덕

주심대법관김소영

대법관이기택